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2년 7월 5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환경부장관 한화진

●대통령령 제32778호

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1호의 위반사항란 중 “응하지 아니한 때”를 “따르지 않은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의 위반사항란 중 “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때”를 “따르지 않은 경우”로 하며, 같은 표 비고 전단 중 “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”을 “최근”으로 하고, 같은 비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4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지 않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처분하는 경우 부과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